

제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142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덕

피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송재원

3. D

4.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범

5.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C, D,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C, D, 한국관광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8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관광공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3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별지 1 목록 각 순번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상토지'라고 하고, 목록 상 순번 ○번 기재 토지를 '순번 ○ 대상토지'라고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경위

1) E(1920. 11. 3.경 F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정정 전후를 불문하고 'E'라고 한다)는 1913. 11. 30.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원토지'란 순번 7기재 토지(이하 위 원토지란 순번 ○ 기재 토지를 '순번 ○ 원토지'라고 하고, 위 부동산변천과정 '원토지'란 기재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각 원토지'라고

한다)를, 1913. 12. 27.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원토지를 각 사정받았다.

2)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 시행)에 따라 원고(설립 당시의 명칭은 '재단법인 G'이었다가 2006. 10. 2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었고, E를 이어 받아 이 사건 각 원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명의 등기경로 경위

1) 피고 대한민국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인 이 사건 각 원토지를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1975. 9. 2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9. 12. 31. 순번 ⑦ 원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구 농지개혁법 상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각 원토지는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변천과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지목 변경,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대상토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의 등기경로 경위

1) 순번 ① 원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은 1990.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1 '변천과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번 ① 원토지가 순번 1, ④ 대상토지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순번 ① 대상토지에 관하여 행정구역 변경으로 명의자가 서귀포시로 변경되었고, 순번 ④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997. 11.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순번 ② 원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이 2006.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지목이 변경되어 순번 ② 대상토지로 바뀌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명의자가 서귀포시로 변경되었다.

3) 순번 ③ 원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은 1990.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3 '변천과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번 ③ 원토지가 순번 3, 5, ⑥ 대상토지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순번 ③ 대상토지에 관하여 행정구역 변경으로 명의자가 서귀포시로 변경되었고, 순번 5, ⑥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997. 11.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순번 ⑤ 원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이 1996. 1. 12.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5 '변천과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번 ⑤ 원토지가 순번 7, ⑨ 대상토지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순번 ⑦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997. 11.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이라고 한다) 명의 등기경로 경위

1) 순번 ④ 원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이 1991.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9.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명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H은 2007. 1. 9.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변경 전 명칭은 주식회사 I)은 2012. 8. 6.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지목이 변경되어 순번 ⑧ 대상토지로 바뀌었다.

2) 순번 ⑤ 원토지에 관하여, 남제주군이 1996. 1. 12.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5 '변천과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번 ⑤ 원토지가 순번 7, ⑨ 대상토지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순번 ⑨ 대상토지에 관하여 2007. 1. 9.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명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H은 2007. 1. 9.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12. 8. 6.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순번 ⑥ 원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 200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12. 8. 6.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지목이 변경되어 순번 10 대상토지로 바뀌었다.

마. 피고 D 명의 등기경로 경위

순번 ⑦ 원토지에 관하여,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7 '변천과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번 ⑦ 원토지가 순번 11 대상토지 외 5필지로 변경되었는데, 순번 11 대상토지에 관하여 J이 2005. 12. 6. 교환을 원인으로, 피고 D이 200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한국관광공사 등기경로 경위

1) 순번 ⑨ 원토지에 관하여,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9 '변천과정'란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번 ⑨ 원토지가 순번 13 대상토지 외 ① 필지로 변경되었다. 순번 13 대상토지 중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K 임야 5㎡에 관하여, 주식회사 L는 1985. 3.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6. 12. 5. 순번 13 대상토지에 합병되었다. 합병 후 순번 13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관광공사가 1989. 11. 4.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순번 10 원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관광공사가 1993. 5.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지목이 변경되어 순번 14 대상토지로 바뀌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제3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원토지를 승계취득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원토지를 매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나 해당 농민들의 상환포기로 폐기농지로 분류 및 처리된 사실, 이 사건 각 원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른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제주군 등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 사건 각 원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원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4에 기재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순번 1 내지 ⑦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순번 8 내지 10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순번 11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한국관광공사는 순번 13, 14 대상토지에 관하여 별지 1 목록의 각 해당 순번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순번 15 대상토지에 관하여 별지 1 목록의 해당 순번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15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가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깨어진 이상 피고 대한민국이 순번 15 대상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과는 다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순번 15 대상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므로 현재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고 이후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인데, 이에 대하여 수십 년간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던 원고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순번 15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의 항변

1) 항변내용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순번 1 내지 14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별지 1 목록 각 해당 순번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항변한다.

2) 관련법리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엇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78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전 소유자는 순번 1 내지 ⑦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C과 그 전 소유자는 순번 8 내지 10 대상토지에 관하여, 피고 D과 그 전 소유자는 순번 11 대상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위 각 토지들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한국관광공사는 순번 13, 14 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피고들 및 그 전 소유자들이 기존에 마쳐져 있던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취득하고 위 각 토지를 점유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해당 각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에 기한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순번 1 내지 ⑦ 대상토지에 관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등기부취득시효, 순번 8 내지 10 대상토지에 관한 피고 C의 등기부취득시효, 순번 11 대상토지에 관한 피고 D의 등기부취득시효, 순번 13, 14 대상토지에 관한 피고 한국관광공사의 등기부취득시효는 피고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에는 피고 한국관광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C, D의 경우에는 각 위에 기재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하여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종철, 판사 박종웅, 판사 황방모

별지 1

목록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M 입야 8,066㎡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0. 10. 29. 접수 제28139호 소유권이전등기)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N 입야 4,016㎡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1. 12. 5. 접수 제30508호 소유권이전등기)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 입야 13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0. 10. 29. 접수 제28139호 소유권이전등기)
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도로 234㎡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11. 12. 접수 제32946호 소유권이전등기)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도로 40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11. 12. 접수 제32946호 소유권이전등기)
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 도로 18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11. 12. 접수 제32946호 소유권이전등기)
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 도로 101㎡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 11. 12. 접수 제32946호 소유권이전등기)
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T 체육용지 2,892㎡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6. 접수 제30739호 소유권이전등기)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U 체육용지 3,98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6. 접수 제30739호 소유권이전등기)
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V 체육용지 6,25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8. 6. 접수 제30739호 소유권이전등기)
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W 전 2,92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10. 8. 접수 제39618호 소유권이전등기)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X 대 13,265㎡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0. 11. 8. 접수 제28954호 소유권이전등기 중 합병한 대 645㎡, 대 2,778㎡)

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Y 도로 5,83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7. 1. 14. 접수 제711호 소유권이전등기 중 합병한 도로 5㎡)

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Z 체육용지 2,27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3. 5. 19. 접수 제12583호 소유권이전등기)

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A 도로 1,13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75. 9. 22. 접수 제14230호 소유권보존등기).끝.

별지 2

부동산변천과정

순번	원토지	변천과정		변천 후 토지
1	M 전 8,516㎡ (1957. 8. 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됨)	1986.1.20.분할	1996.5.16.분할	
		M 임야 8,300㎡	M 임야 8,066㎡	별지 1 기재 순번 1 대상토지
			P 임야 234㎡ (1997. 7.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별지 1 기재 순번 4 대상토지
		AB 임야 216㎡		
2	N 전 4,016㎡	1957. 8. 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됨. 면적은 그대로 유지됨(1,215평 = 4,016㎡).		별지 1 기재 순번 2 대상토지
3	AC 전 6,420㎡ (1957. 8. 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됨)	1986.1.20.분할	1996.5.16.분할	
		AC 임야 4,960㎡	AC 임야 4,555㎡	
			Q 임야 405㎡ (1997. 7.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별지 1 기재 순번 5 대상토지
		AD 도로 1,133㎡		
		O 임야 327㎡	O 임야 138㎡	별지 1 기재 순번 3 대상토지
			R 임야 189㎡ (1997. 7.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별지 1 기재 순번 6 대상토지
4	T 전 2,892㎡	지목이 1957. 8. 4. 임야로, 2007. 11. 19. 체육용지로 각 변경됨. 면적은 그대로 유지됨(875평 = 2,892㎡).		별지 1 기재 순번 8 대상토지
5	U 전 4,122㎡	1986.1.20.분할	1996.5.16.분할	
		U 전 4,086㎡	U 전 3,985㎡ (2007. 11. 19. 지목이	별지 1 기재 순번 9 대상토지

순번	원토지	변천과정						변천 후 토지
		체육용지로 변경됨) S 전 101㎡ (1997. 7.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별지 1 기재 순번 7 대상토지
		AE 전 36㎡						
		6	V 전 6,258㎡	2017. 9. 22.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됨. 면적은 그대로 유지됨(1,893평 = 6,258㎡).				
7	AF 전 11,831㎡	1973. 12. 23. 분할	1993. 5. 20. 분할	2005. 10. 11. 분할	2005. 11. 3. 합병	2005. 11. 16. 분할	2007. 2. 27. 분할	별지 1 기재 순번11 대상토지
		AG 전 11,567㎡	AG 전 11,510㎡	AG 전 10,254㎡	AG 전 12,839㎡ (AH 전 2,585㎡ 와 합병)	AG 전 9,533㎡	AG 전 6,610㎡	
							AI 전 3,306㎡	
				AJ 전 1,256㎡				
		AK 전 57㎡						
		AL 전 264㎡						
8	AM 전 3,428㎡	1981. 6. 30.분할			1990. 11. 7.합병			별지 1 기재 순번12 대상토지
		AM 임야 645㎡			X 대 13,265㎡에 합병됨			
		AN 임야 2,778㎡						
		K 임야 5㎡						
9	AM	1981. 6. 30.		1990. 11. 7.		1986. 12. 5.		

순번	원토지	변천과정			변천 후 토지
		분할	합병	합병	
	전 3,428㎡	AM 임야 645㎡	X 대 13,265㎡		
		AN 임야 2,778㎡			
		K 임야 5㎡		Y 도로 5,838㎡에 합병	별지 1 기재 순번13 대상토지
10	Z 전 2,278㎡	지목이 1957. 8. 4. 임야로, 1999. 2. 11. 체육용 지로 변경됨. 면적은 그대로 유지됨(689평 = 2,278 ㎡).			별지 1 기재 순번14 대상토지
11	AC 전 6,420㎡	1986. 1. 20. 분할	1996. 5. 16. 분할		
		AC 임야 4,960㎡	AC 임야 4,555㎡		
			Q 임야 405㎡		
		AD 도로 1,133㎡			별지 1 기재 순번15 대상토지
		O 임야 327㎡	O 임야 138㎡		
			R 임야 189㎡		